의안 번호	179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3. 10. 17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179호

다. 제출일자 : 2023. 10. 05.

라. 회부일자 : 2023. 10. 12.

2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이므로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함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

○ 기　간 : 2023. 08. 17. ~ 2023. 09. 06.

○ 의　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1조[1]에 명시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.)의 존속기한이 “2023년 12월 31일”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“2028년 12월 31일까지” 5년을 연장하는 것임.

○「지방재정법」제9조[2]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,

○ 2023년 제1차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, 해당 존속기한 연장(안)이 원안가결 되었음.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와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

---

1)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11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(개정 2020.12.31.)

2)「지방재정법」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